

# 본회 제11차 대의원 정기총회 개최

## '90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확정 정관 개정 및 임원 선임·보선

- 홍 보 부 -



▲ 본회 제11차 대의원 정기총회 장면

본회는 지난 2월 26일 양돈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전동용 회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대의원들은 ▲'89년도 수지결산안 ▲'90년도 회비 및 홍보분담금 부과기준안 ▲'9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정관개정안 ▲사료분석실 운영계획안을 승인하고 임기만료된 감사 2명과 결원이 된 이사 3명을 보선했다.

### 전 회장, 양돈업계의 힘과 목소리 한 곳으로 결집해 줄 것 당부

이날 총회에서 전동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동안 양돈불황과 수입개방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와 양돈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준 대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하고, 「금년에도 업계의 힘과 목소리를 한 곳으로 집결, 우리의 생존권 보장과



▲ '89년도 감사보고를 하는 박대관 감사



▲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에게 돈육소비홍보상을 수여하는 전동용 회장

산업발전을 위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노영환 전무이사와 박대관 감사로부터 각각 '89년도 사업실적과 '89년도 감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노 전무이사는 보고를 통해 「'89년도에는 대폭적인 쇠고기 수입과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량 증가 등으로 양돈산업이 매우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어려운 중에서도 협회는 양돈인들의 4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법을 개정했고, 양돈정보를 4면에서 20면으로 증면 발행해 국내외 최신 양돈정보를 신속하고 풍부하게 제공해 오고 있다」고 보고했다.

노 전무이사는 또 「협회에서는 지난해에 수입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무역위원회로부터 돈육통조림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정을 받았고,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수입 상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노 전무이사는 이밖에도 「당초 계획보다 100% 증가한 소비홍보사업과 계통출하를 통한 유통구조개선, 자조금제도 입법을 위한 자조금법(안) 확정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양돈산업과 협회 발전, 회원들의 이익보호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안전심의에 들어가 총 734,694,886원의 세입과 720,150,680원의 세출로 구성된 '89년도 수지결산을 승인하는 한편, '90년

### '90년 회비·홍보분담금 부과기준 확정

도 회비는 400두 미만의 경우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회비부과금 4만원, 사료분석사업 비용 1만원 등 5만원을 기본부과하고, 400두 이상 사육하는 회원은 기본회비에 100두 초과당 1만원씩 회비를 추가 부과기로 했다. 대의원들은 5월 30일까지 회비를 완납하는 지부에 대해서는 완납금액의 10%를 지부운영 보조비로 교부하기로 했다.

또 홍보분담금은 100두 이하인 경우 5천원을 기본 부과하고, 101두 이상인 경우 기본부과금에 사육두수 1두 초과당 50원을 추가해 부과기로 했으며, 이 역시 8월말까지 납하는 지부에 대해 완납금액의 30%를 지부의 돈육소비홍보 보조금으로 교부하기로 했다.

이어 대의원들은 ▲ 자조금제도 입법 및 배합사료와 기자재의 관세 및 부가세 영세율 적용추진 등 양돈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산업구조개선사업 ▲ 축산(양돈)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 및 용자지원 확대 등 축산(양돈)분뇨 처리제도 개선사업 ▲ 지부 미창설지역 지부설립, 전문위원회 활성화 등 협회조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도사업 강화 ▲ 제2검정소 운영 정상화, 한국



▲ 김광식 강원 영동지부장에게 모범지부상을 수여하는 전동용 회장



▲ 송파농산에 '89 최우수농장상을 수여하는 전동용 회장

형 종돈 선발지수식 제정 등 육질개선을 위한 종돈개량사업 ▲ 돈육수요 개발, 돈육요리 홍보 책자 발간 등 돈육소비 홍보사업 ▲ 월간양돈, 주간양돈정보 발행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90사업계획과 일반회계 310,500,000원, 홍보회계 274,200,000원, 제1검정소회계 280,340,000원, 제2검정소회계 218,557,000원 등 총 1,083,597,000원(전년대비 6% 증가)으로 짜여진 '90년도 수지예산안을 승인했다.

### 본회 정관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대의원들은 이밖에도 지난해 제3차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상정된 정관개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임기만료된 감사에 박대관, 김관식 현 감사를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한편, 결원중인 이사 3명에 김태환씨(전남도협의회장), 엄원섭씨(전 경기 광주지부장), 박재복씨(장군농장 대표)를 보선했다. 개정된 정관은 농림수산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시행된다.

### 모범지부상, 돈육소비홍보상, 검정소 최우수농장상 등 시상

한편 전동용 회장은 정기총회 의안심의에 앞

서 '89년도에 실시한 종돈능력 검정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한 송파농산(대표: 이선용)에 최우수농장상을, 태화축산(대표: 이시길)과 성림축산(대표: 홍성태)에 우수농장상을 수여했다.

또 전동용 회장은 '89년도에 지부 활동이 활발하고 협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경남도협의 회(회장: 신태식)에 모범도협의회상을, 당진지부(지부장: 최은범), 강원 영동지부(지부장: 김광식), 이리익산지부(지부장: 윤주성), 화순지부(지부장: 조영송), 영천지부(지부장: 이광우)에 모범지부상을 수여하고, '89년중 돼지고기 소비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충북도협의회(회장: 김철수), 김해지부(지부장: 강복균), 진천지부(지부장: 박성옥), 김포지부(지부장: 이종열)에 돈육소비홍보상을 수여했다.

이 밖에도 전동용 회장은 최근 새로 도협의회장, 지부장으로 선출된 김철수 충북도협의회장, 조옥봉 경북도협의회장, 이교현 평택지부장, 이진기 천안천원지부장, 하오조 마산지부장, 김광식 강원 영동지부장, 은중표 정주정읍지부장, 송동혁 제천제원지부장, 최만수 춘천춘성지부장, 양환길 김제지부장에게 지부장 인준서를 수여했다.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정관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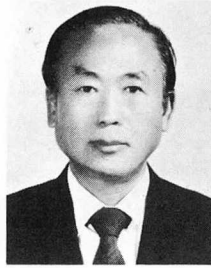
김태환 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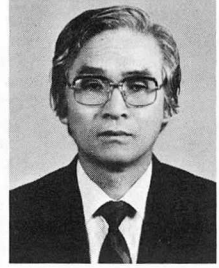
엄원섭 이사



박재복 이사



박대관 감사



김관식 감사

**정기총회에서 통과한 정관개정안**

현행	개정안
<p>제2조(목적) 본회는 양돈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생산증대 양돈산물의 유통개선, 소비확대 및 수출신장을 도모하여 회원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가축산진흥시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목적) 본회는 양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양돈인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9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li> <li>2. 파산</li> <li>3. 금치산</li> <li>4. 제명</li> <li>5. 탈퇴</li> </ol>	<p>제9조(회원의 자격상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6. 과년도 회비 미납</li> </ol>
<p>제10조(제명)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하였을 때 또는 자격미달이 되는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처분할 수 있다.</p>	<p>제10조(제명) 회원이 다음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처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의 목적에 위반하였을 때</li> <li>2. 본회의 결의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li> <li>3. 회원의 의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li> </ol>
<p>제13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임원은 회원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단, 회장 및 상근임원은 회원이 아닌자라도 선임할 수 있다.</li> <li>2. 전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li> </ol>	<p>제13조(임원의 선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단...) 이하 삭제</li> <li>2. 전무이사는 회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며, 회원이 아닌자라도 선임할 수 있다.</li> </ol>
<p>제19조(대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대의원은 이사와 지부장으로 구성하고 그 선출과 자격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li> <li>2. 대의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대의원이 개선택될 때까지 그 임기는 자동 연장된다.</li> </ol>	<p>제19조(대의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본회 대의원은 이사, 도협의회장, 지부장과 대의원 선출규정에 의해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li> </ol>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행일 : 이 정관은 199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li> </ol>